

사우디 관세청과 대한민국 관세청간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사우디 관세청과 대한민국 관세청(이후“당사자”라고 한다)은,

양국간 합의된 “경제 기술 협력 협약”을 고려하고,

관세법의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상업적·재정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침해함을 인식하며,

수출입 단계에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정확한 산정과 금지·제한 및 통제조치의 적절한 집행의 확보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관세법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관세범죄의 방지와 수출입에 부과되는 제세의 정확한 징수를 위한 노력이 상호협력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1953년 12월 5일자 관세협력이사회(세계관세기구)의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항
정의



5/2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1. "관세법"이라 함은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한 관세·제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또는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금지·제한 및 통제 조치, 관세당국에 특별히 부여된 행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물품의 수입, 수출, 환적 및 이동 및 지불수단에 관하여 집행되는 법령 및 규정을 의미한다.
2. "관세범죄"라 함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3. "사람"이라 함은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4. "요청당국"이라 함은 세관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5. "피요청당국"이라 함은 세관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6. "정보"라 함은 가공 또는 분석 여부에 상관없이 이들의 전자식 사본, 혹은 인증 또는 공인된 사본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서류, 보고서, 증명 또는 인증된 사본을 의미한다.

제2항

양해각서의 범위

1. 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억제



2



5/2

및 관세행정정보화를 위하여 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정적인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양해각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지원은 당사자의 국가에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및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3항 정보의 제공

1. 당사자는 요청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관세법 및 절차에 대한 모든 제공 가능한 정보 및 이 양해각서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a) 세관 훈련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관세범죄의 새로운 추세, 수단 또는 방법
- (b) 관세법에서의 주요 개정사항 및 단속 기법과 적용 방법, 공동의 이해와 관련된 기타 문제 논의

2. 당사자는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a) 요청 당사자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 당사자의 관세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 (b) 요청 당사자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 당사자의 관세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3. 당사자는 요청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영역에 적용되는 관세법 위반을 성립하거나 혹은 성립할 수 있는, 기 실행된 혹은 계획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상호



3

제공한다.

제4항 조사 및 정보

요청에 의해 피요청당사자는 감시를 지속하며 요청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a) 관세범죄를 범하였거나 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 (b) 관세범죄에 해당된다고 알려진 혹은 그러한 혐의를 받는, 운송중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품
- (c) 관세범죄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혹은 그러한 혐의를 받는 교통수단
- (d) 관세범죄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혹은 그러한 혐의를 받는 토지

제5항 전문가 및 증인

요청에 의해, 피요청당사자는 소속공무원을 관세법 적용에 대한 사안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요청당사자 영토에 있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항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양해각서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요청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첨부문서를 포함한다. 향후 지체없이 서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긴급 또는 필요시 구두로 요청할 수



4



75

있다.

2. 본 항 제1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 (a) 요청하는 당사자
- (b) 요청되는 조치가 있을 경우 그 조치
- (c) 문제가 되는 사안 및 요청의 사유
- (d) 요청의 목적과 관련된 법규 및 기타 법령
- (e) 알려져 있는 경우, 관련인에 대한 가능한 범위까지의 간략한 설명

3.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공식언어 또는 영어로 한다. 이러한 요청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 혹은 피요청당사자의 공식언어로 번역된다.

4. 요청이 기본 필요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방조치에 대한 요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요청을 수정하거나 또는 완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이 양해각서의 11항 1호에 따라 양 당사자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한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할 경우, 이 양해각서 하에 양 당사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제7항 요청의 이행

1. 당사자는 요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공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5/6

2. 지원에 대한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법률이나 행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한 요청당사자의 요청 방식에 따라 이행된다.
3. 요청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자국의 공무원에게 물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에 대한 세관 분야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의견 및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피요청당사자가 요청에 응할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면, 피요청 기관은 그 요청을 적절한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서면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당사자가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요청당사자가 부여한 조건에 따라 관세범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 (a) 피요청당사자의 사무실에서 관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문서,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열람
 - (b) 관세범죄와 관련된 문서,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복사
6. 본 항 5호에 명시된 공무원은 타방 당사자의 관세영역에 출석할 때에는 항상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본 항 제5호에 명시된 공무원은 타방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자신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경우, 동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 당사자로부터 제공 가능한 보호 및 지원을 향유한다.



6



5

제8항
비밀

1. 이 양해각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서한, 서류는 오직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 목적을 위하여 전달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받는 모든 정보나 요청은, 어떤 형태로든 기밀로 다루어지며, 접수국의 법규에 따라 동종의 정보에 대해 제공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각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에 의거 취득한 정보가 형사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부합하는 법률과 규정 및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요청되어야 한다.

제9항
지원의 예외

1.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 (a) 지원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밖의 본질적인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
 - (b) 지원요청이 피요청 당사자의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기타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5

- (c) 지원 요청이 세관분야와 연관이 없는 경우,
- (d) 지정된 경우, 요청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는 요청인 경우

2. 당사자는 지원제공을 거부하기에 앞서 지원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요청당사자가 그 조건이나 요건을 수용한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3. 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항 비용

1.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집행에 발생하는 모든 자기 비용을 감수한다. 요청을 이행하는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경비가 요구되거나 장래 요구될 경우, 양 당사자는 비용의 부담방법 및 그러한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1항 양해각서의 이행.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협력은 당사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방법에 대해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8



5

제12항
적용 영역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국가의 관세영역에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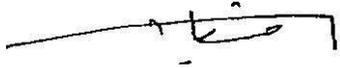
제13항
최종 조항

1. 이 양해각서는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상호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은 본 항 제1절(Section)의 절차를 통해 발효된다.
3. 이 양해각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된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개시되는 모든 협력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4년 11월 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Saleh M. AlKhaliwi



대한민국 관세청장
김낙회



المركز الوطني للوثائق والمحفوظات